

# 행정대학원 학칙

## 제 1 장 총 칙

제 1조(목적) 행정대학원은 대한민국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행정 및 사회복지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와 교수를 통하여 지도적인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갖춘 행정 및 사회복지전문가를 양성, 국가의 행정과 사회복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명칭) 본 대학원은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(이하 "대학원"이라 한다.)이라 칭한다.

제 3조(과정)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(이하 "석사과정"이라 한다.)을 두며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제 2 장 학과(전공) 및 정원

제 4조(학과(전공)) ① 본 대학원에 설치되는 각 과정의 학과(전공) 및 학생정원은 <별표1>과 같으며, 제1조의 목적과 산학협동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고지도자과정 등 공개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.(개정:2019.12.09)

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, 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1.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
2.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
3.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

제 5조(학과의 설편) 본 대학원의 학과(전공)설치와 폐지는 입학정원 내에서 가야대학교총장(이하 "총장"이라 한다.)이 정한다.

## 제 3 장 입 학

제 6조(입학시기)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.

제 7조(지원자격)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내·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와 취득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

하는 자

**제 8조(본교재직 전임교원의 지원자격)** 본교의 전임교원은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으며, 휴직 후 입학할 수 있다.

**제 9조(입학전형)** 입학 전형은 필답고사(전공, 외국어, 실기) 또는 서류전형으로 행한다. 다만, 총장은 필요에 따라 일부과목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.

## 제 4 장 등록 및 학적

**제10조(등록)** ① 학생은 대학원 과정별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이상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② 수업연한 이내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그 학점이 3 학점 이하일 경우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1조(수료자의 등록)** ① "학위과정을 수료한 자"라 함은 학칙에 의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이수하여야 할 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
②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해 학기에 논문준비 등을 위해 수료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.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2조(휴학)** 휴학은 질병, 출산, 육아 또는 기타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병역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.<2016. 12. 22>

**제13조(복학)**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4조(제적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된다.

- ①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 자
- ② 등록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
- ③ 기타 대학원위원회의 징계 결정으로 제적된 자
- ④ 재학연한 내에 해당학위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

**제15조(자퇴)** 자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의 허락을 받아

자퇴원을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**제16조(재입학)** 제적 또는 자퇴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을 뺀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징계로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할 수 없다.

**제17조(편입학)** 일반 편입학은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.

## 제 5 장 학점, 수업연한, 수료, 전과, 교육과정

**제18조(학점인정 일수)** 타당한 사유없이 학기중 수업일수의 1/30이상을 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소정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없다.

**제19조(성적평가)**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.

(등급)	(점수)	(평점)
A+	95 ~ 100	4.5
A	90 ~ 94	4.0
B+	85 ~ 89	3.5
B	80 ~ 84	3.0
C+	75 ~ 79	2.5
C	70 ~ 75	2.0
F	69이하	0

**제20조(이수단위 및 인정평점)** ① 교과 이수단위는 2학점으로 하고,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학점으로 한다.

② 과목별 이수인정 학점은 C학점 이상, 전과목 평점평균은 3.0(등급 B학점)이상 되어야 해당학기를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.

**제21조(학점인정)** ① 재입학한 학생의 기취득학점은 인정된다.

② 편입학한 자가 원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중 편입학한 대학원의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 할 수 있다.

**제22조(수업연한)** ①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한다.

② 국내·외 대학원의 학점인정을 받은 자 또는 학점의 조기 취득, 학문의 탁월성이 인정되어 학위수여요건을 조기에 충족시킨 자는 수업연한을 석사과정은 6월 이내 단축할 수 있다. 단,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재학연한은 5년으로 하며,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전 재적기간을 통산한다. 단,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**제23조(학년도 등)** ① 대학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.

② 정기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한다.

1. 하계방학, 동계방학 기간은 따로 정한다.

2.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.

**제24조(이수학점)**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재학중 취득하여야 할 총 학점수는 다음과 같다.

1.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과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이수학점은 26학점(논문지도학점 포함)으로 한다.

2.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이수학점은 32학점(특수연구 포함)으로 한다.

②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교과학점은 전공학점과 부전공 또는 필수, 선택교과학점으로 한다.

③ 각 과정의 학생은 교과학점 이외에 학위취득을 위해 연구지도를 받아야 한다.

④ 본 대학교와 협정관계에 있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될 수 있다.

**제25조(수강학점)** ① 매학기 8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

다만,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으나, 그 절차와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학과장은 학생 수강능력을 고려하여 수강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.

**제26조(전공변경)** 전공변경은 동일학과 내에 한하며 각 과정의 2학기초에 신청하여야 하며, 새로운 전공의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
**제 27조(수료시기)**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.

**제 28조(수업일수)**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(매학기 15주)로 한다.

제 29조(교육과정)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 제 6 장 자격시험

제30조(자격시험 종류)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.

제31조(자격시험) ①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각 과정의 수료일로부터 석사과정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병역의무로 인한 복무기간은 제외한다.

③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경과자는 자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한 후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## 제 7 장 학위논문

제32조(학위논문 제출자격 및 심사) ① 석사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수학 기간내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
2. 학업성적이 종합평균 평점 3.00이상인 자
3.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
4.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
② 학위논문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심사 및 구술고사를 실시하며, 심사위원의 수는 석사과정은 3인으로 한다.

③ 학위논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논문제출을 대신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며, 전공의 특성에 따라 수료를 위한 최소 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논문제출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가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 후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면 논문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.

제33조(학위논문 제출) 학위논문 제출은 다음 각 호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- 지도교수 선정
- 연구계획서 제출
- 지도보고서 제출
- 논문발표 및 심사
- 학위논문 제출

**제34조(학위논문 심사료)**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 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## 제 8 장 학위수여

**제35조(학위등록 및 학위수여)** 각 학위과정별 학위는 이수하여야 할 학점을 취득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자에게는 <별표 2>의 학위를 수여한다.

**제36조(학위종별)** 학위종별은 <별표 2>와 같이 한다.

**제37조(학위 수여자격)** 석사학위 수여자격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.

- ① 26학점 취득자(논문지도학점 포함)
- ②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3.00이상인 자
- ③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- ④ 1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고 수학연한에 해당하는 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한 자
- ⑤ 논문심사(시험)에 합격한 자
- ⑥ 학위수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**제38조(학위수여자 사정)** 학위수여자를 결정하는 사정은 본 대학원 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학위 수여 대상자를 결정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39조(학위수여 및 구분)** 본 대학원에 수여하는 학위는 사회복지학 석사학위와 행정학 석사학위를 수여한다.

**제40조(학위 수여)** 학위수여는 본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수여하며, 학위종별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 41조(학위기 양식)** 학위기는 별지1과 같이 한다.

**제42조(학위수여 취소)**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**제43조(학위복장 규정)** 석사, 박사 학위복의 학위종별 후우드 색깔은 다음과 같다.

① 후우드 색깔

전 공	해당학위	후우드색깔
행정학	행정학석사	갈색
사회복지상담학	사회복지학석사	연보라색

② 후우드 내부의 색깔은 청색, 백색, 홍색으로 한다.

③ 학위모 수술 색깔은 석사모는 백색으로 한다.

## 제 10 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

**제44조(학칙준수)** 학생은 본 대학원의 학칙과 각종 내규를 준수하고 담당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.

**제45조(장학금)**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46조(징계)**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. 단,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 11 장 직 제

**제47조(대학원장)** 각 대학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**제48조(조직)** 본 대학원에는 원장 외에 각 과정의 학과마다 교원(조교는 제외한다.)을 둘 수 있다.

**제49조(학과장 또는 전공주임)** 각 학과(전공)에는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을 두며 학과장은 그 학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
## 제 12 장 위원회

**제50조(대학원위원회)**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둔다. 본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.

**제51조(대학원위원 임기)** 대학원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단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52조(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)**

- ① 각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  - 2. 학과와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
  - 3.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  - 4. 대학원에 의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
  - 5. 학위의 전공 영역에 관한 사항
  - 6.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② 대학원 위원회는 전체 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 심의한다.

**제53조(위원회 회의 및 의결)** 본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 13 장 기 타

**제54조(위임규정)** 이 학칙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적용한다.

**제55조(세부 시행규정)** 본 대학원 학칙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56조(학칙개정)**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정안을 최소 7일 이상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, 대학원위원회,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회 심의를 거치고, 법인이사회 의결 후 확정·시행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(신설:2019.12.09)

- 1. 법령 및 정관 등 상위 규범의 개정에 따른 경미한 내용의 개정
- 2. 미미한 내용 및 명백한 오류 수정을 위한 내용의 개정
- 3. 단순한 자구수정을 위한 개정

## 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학칙 시행이전의 사회복지학과 재적생은 사회복지상당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.
3. (학위수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당시의 학과(전공)명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

행정대학원 입학정원표

계열	학과(전공)	입학정원
인문사회	행정학, 사회복지상담학	30

(별지 1)

석 제 호
<b>학 위 기</b>
성 명 19   년   월   일생
위사람은 본 대학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하여           학 석 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. 논문제목 :
<b>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(학위명) 0 0 0</b>
위의 인정에 의하여           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. 20   년   월   일
<b>가 야 대 학 교 총 장 (학위명) 0 0 0</b>
학위수여번호 : 가야대           (석)

<별표 2>

행정대학원 전공별 수여학위명

대학원명	학과(전공)	석사학위
행정대학원	행정학	행정학석사
	사회복지상담학	사회복지학석사